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 정책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임유경

(auri

## CONTENTS

**PROLOGUE**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소고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3. 기존 정책 · 제도의 한계
4. 향후 정책 과제
5.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방안

**EPILOGUE**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0 PROLOGUE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소고

---

( a u r i

# 0 PROLOGUE

## 공동주택 거주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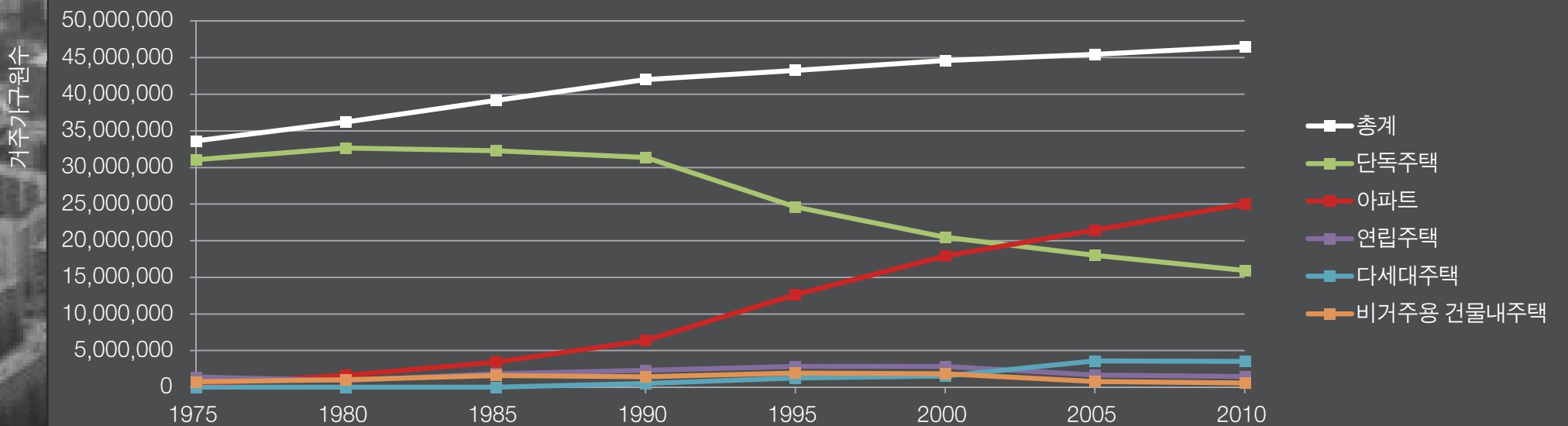
2010년 기준 공동주택 거주비율(전국)

공동주택 거주비율 : 일본 40%, 영국 18%, 미국 3.9%

71.1%

2010년 기준 공동주택 거주비율(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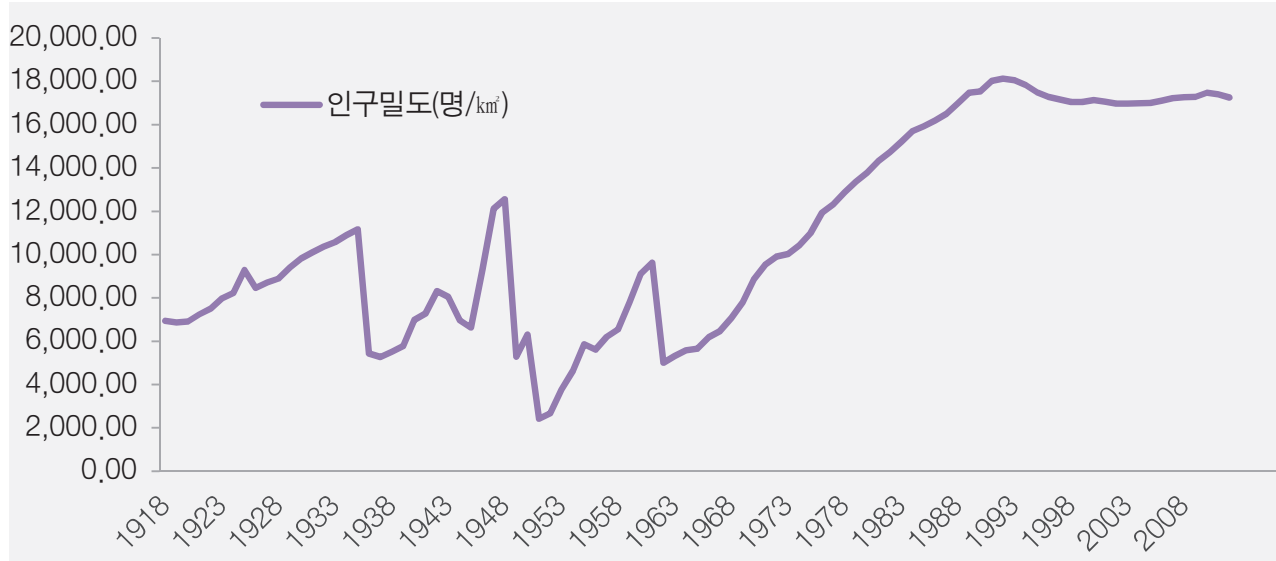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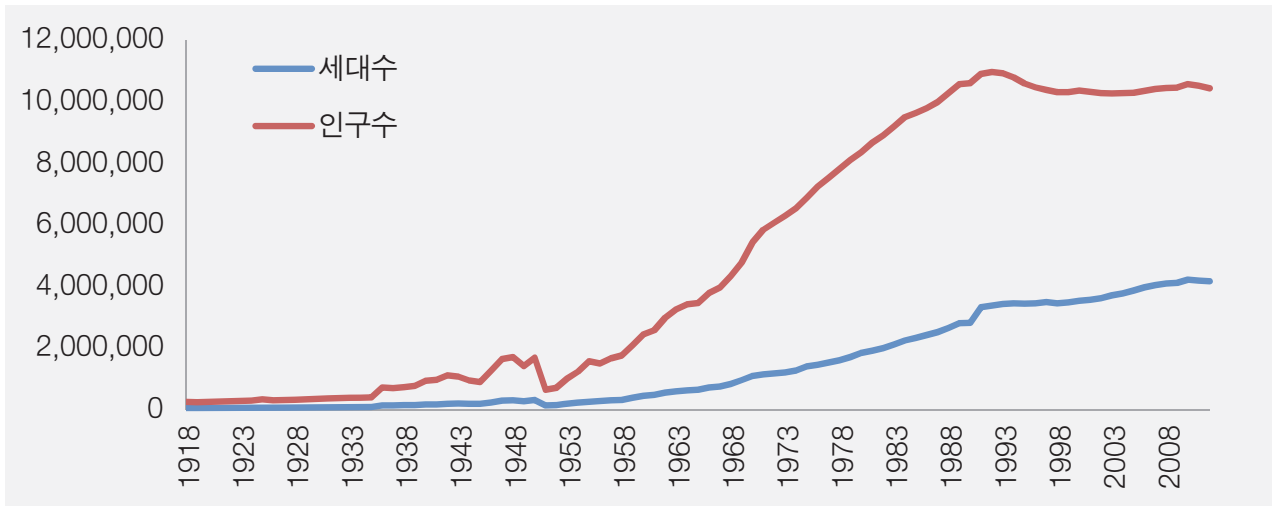
83.6%



# 0 PROLOGUE

왜, 공동주택인가?

**DENSITY - 도시로의 인구 집중**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대량공급/ 주택건설의 최우선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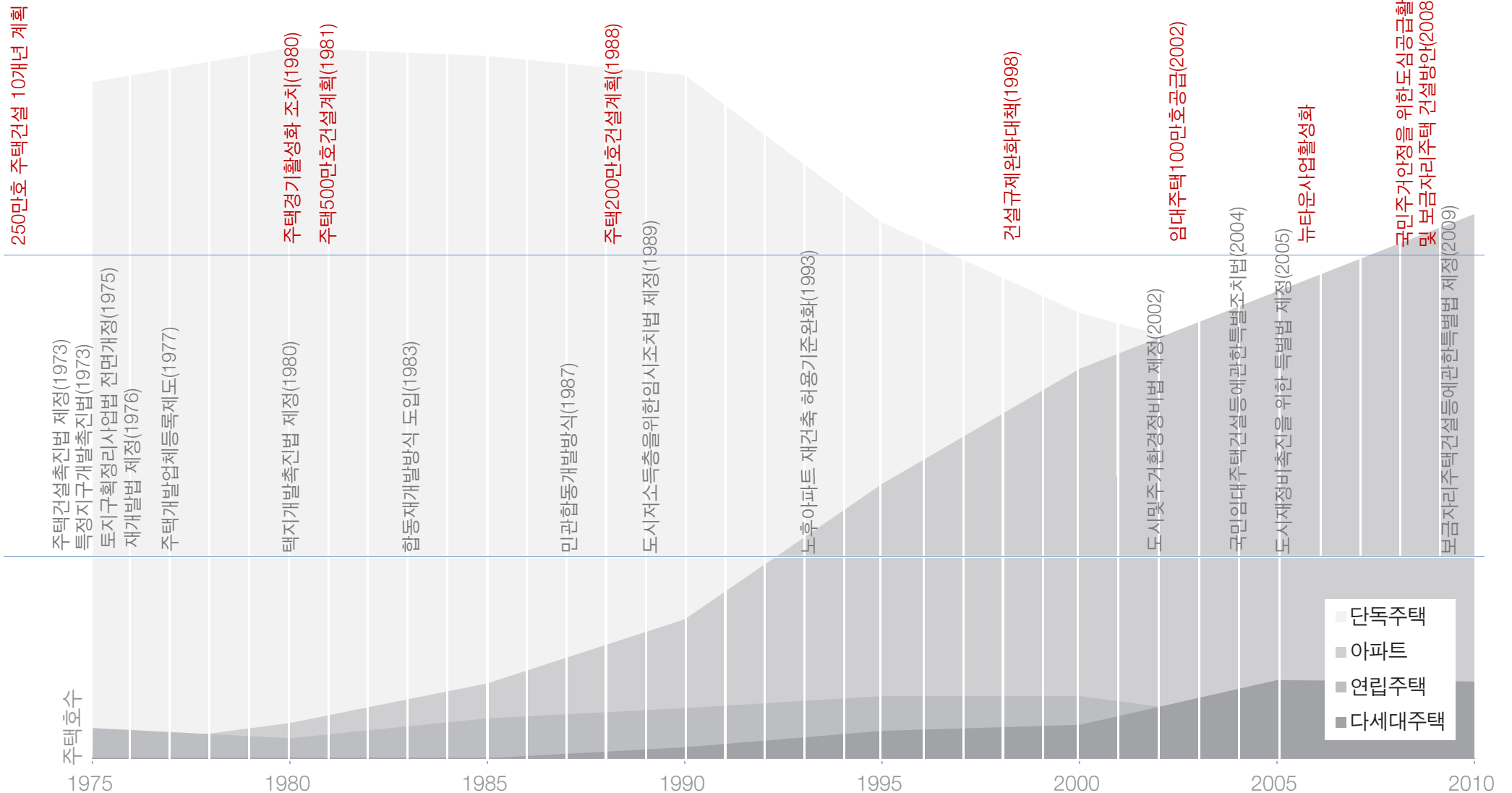


서울시 세대수 및 인구밀도 변화 추이

# 0 PROLOGUE

왜, 공동주택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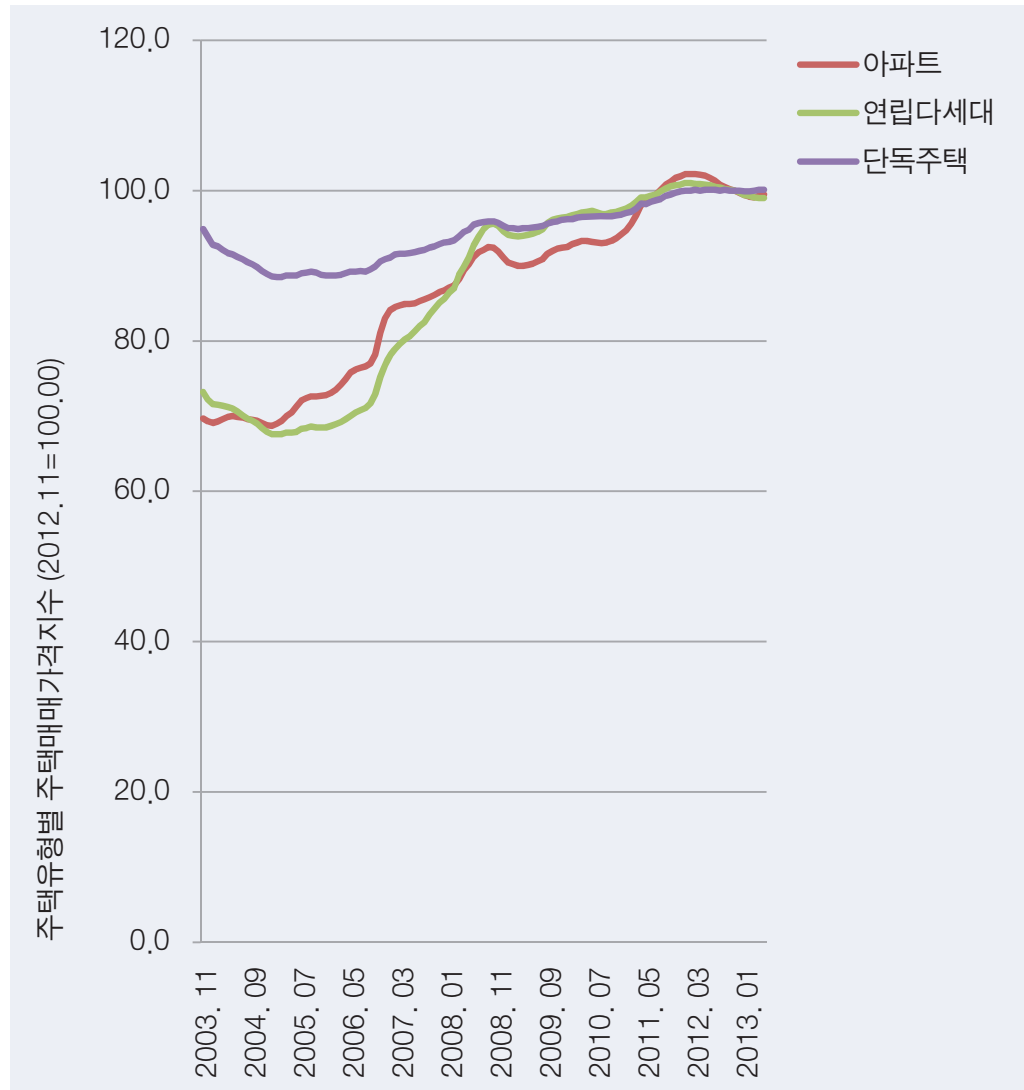
## POLICY – 도시확장과 주택공급을 위한 최적해로서의 공동주택 주택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변화



# 0 PROLOGUE

왜, 공동주택인가?

## EXCHANGE VALUE – 상품으로서의 가치 자산증식수단으로서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가격상승폭이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컸기에 **자산증식수단으로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았다.”

- 천현숙(2002)

“한국에서 아파트단지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던 핵심은 아파트가 가격으로 평가되는 **‘상품’**이 되었다는 사실”

- 발레리 줄레조(2007)





# 0 PROLOGUE

왜, 공동주택인가?

## DESIRE –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 중산층의 이상적인 주거 형태로 인식

“아파트가 중산층의 이상적 거주 유형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와, 중산층을 주요 수요 계층으로 상정하고 지속적으로 고급화 전략을 쓰면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의 상업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파트 입성을 통해 중산층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주민들의 왜곡된 의식**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백혜선 · 임서환 · 서수정 · 임유경 · 진태승 · 이선혜(2009)



# 0 PROLOGUE

왜, 공동주택인가?

**CONVENIENCE** – 생활편리성에 대한 욕구 근대성의 상징으로서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유지관리의 용이성, 프라이버시의 확보, 높은 설비 수준, 단지 내 상가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았다.”

- 백혜선 · 임서환 · 서수정 · 임유경 · 진태승 · 이선혜(2009)



# 0 PROLOGUE

## 공동주택, 어떻게 건설되어 왔는가?

### CONSTRUCTION of Collective Housing



상  
하  
평  
지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단독주택지에 다가구·다세대 주택 입지
-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의 최대 쟁점은 **최대한의 임대면적 확보**
- 기반시설 확충 없이 단독주택지가 고밀화되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짐**



# 0 PROLOGUE

## 공동주택, 어떻게 건설되어 왔는가?

### CONSTRUCTION of Collective Housing



주택  
수  
화

-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김 : **바닥면적 최대화, 평면의 표준화, 공정의 효율화** 추구
- 주택 정책은 **주택의 양적 확대**, 주택 관련 제도는 **신규 '건설'에 초점**
-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 아파트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 0 PROLOGUE

공동주택에서의 삶의 '질', 왜 지금 이야기되는가?

**QUALITY OF LIFE** in Collective Housing



## >>> 공동주택 건설, 공동주택에서의 삶을 합리화하는 기본 전제들에 대한 재고 시점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대량 공급 → 주택보급률 100% 달성, 공동주택 신규 개발 수요 감소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공동주택 →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가치 상승세 둔화

이상향으로 여겼던 공동주택 생활 경험 → 공동주택 생활로 인한 갈등 경험, 스트레스 누적

#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 a u r i

#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 신규 공동주택을 위한 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기준 설정

-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5년 6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에 대한 기준 도입
- 2005년 도입, 2006년부터 시행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따라 사업주체는 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할 것을 규정
  - 2013년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제’로 통합

##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관리

- 기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내에 층간소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법시행령」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에서는 하자여부 판정 등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 외에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의 사무로 규정
  -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전문가 현장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토대로 중재안을 작성
  - 결정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짐

## 법적 해결을 위한 법률적 근거

-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인근 소란등’의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할 수 있도록 규정
- 「민법」에서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 층간소음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정부 측에서는 화해 권고 수준에 그치는 한계
- 환경부에서는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하고자 2012년 3월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설치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활동 출처 : 환경부(2012), “체감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TF 중간점검” , p.13.



〈전화상담〉



〈현장측정 및 진단〉



〈민원인 현장상담〉

# 1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 층간소음 관련 제도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신규 공동주택	건설기준	아파트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관련 기준 도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前)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現)녹색건축 인증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기존 공동주택	운영	층간소음 대책위원회 등	-
	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택법」 제44조, 제57조
	분쟁조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46조의2
		환경조정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사법절차	인근소란 등에 대해 경범죄 적용	「경범죄처벌법」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	「민법」
지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제도현황

정책방향

한계

향후과제

제도화방안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a u r i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신규 공동주택 관련 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바닥구조 기준 강화
  -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개정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2013.5.7] [대통령령 제24529호, 2013.5.6, 일부개정]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다가구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추진(2013.5.15)
  -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 추진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및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 수립 예정
  -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쟁 조정의 기준이 미흡 판단
-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토해양부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예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이를 시·도지사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

### 분쟁 조정 시 피해기준 강화

- 환경부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40dB, 밤35dB’ 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 기준은 ‘낮 55dB, 밤 45dB’ 로 설정되어 있는데, 층간소음 갈등의 주요 원인인 아이들 발자국 소리 등의 경량충격음을 규제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
  - cf. WHO 소음기준 : 거실 35dB, 침실 30dB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지자체와 공동주택 주민 차원의 자발적인 노력 증가

-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룰 TF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기술적 해결책과 주민 간 관계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경기도와 인천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아파트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
- 경기도 하남시, 부산시 등에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위해 민원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고 있음

#### ※ 주민 차원의 자체 노력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한 사례

- (경기도 하남시) 자체 운영위원회 출범. 주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운영규칙 마련. 안내문 배포 및 안내방송 등 자체적 노력과 이웃간 상호 배려 노력으로 층간소음 민원 1/10로 감소
- (부산 해운대구) 2012년 11월 자체 운영규칙 마련.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도움으로 주민 생활패턴을 조사하여 운영규칙에 반영
- (대구 수성구 녹원맨션) 2012년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방지 규정’ 을 제정·시행 : 층간소음 자제 대상 및 자제 시간,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 포함. [소음유발 세대 시정 요청 -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조치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개선권고 -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측정 및 조정신청] 등 4단계 대응 절차 마련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기술 개발

- 층간소음 문제에 장·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논의
  - 업계에서는 차음성능이 강화된 기능성 바닥재를 개발하거나 어린이방처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한정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 완화용 매트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벽식 구조에 비해 진동 감쇄능력이 뛰어난 기둥식 구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논의 제기

#### ※ 층간소음 완화 관련 기술 개발 현황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층간소음방지 온돌 패널 제품 - (주) 소음없는 세상
- 층간소음 방지와 난방비 절감이 가능한 강화마루 - 동화마루 그린옵션플러스
- 중공슬래브 신기술 - SH공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cf. 중공슬래브 :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0mm에서 280mm로 30% 이상 증가, 기존 벽식구조와 비교해 약 5dB 이상 낮은 수치.  
 청각실험 결과 아이들 소음 상당부분 감소, 연간 120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
- 탄성과 강도를 동시에 높이는 염화비닐수지(PVC) 바닥재 생산 - KCC
- 층간소음 방지매트 - LG하우시스의 놀이방매트



# 2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 요약

주체	구분	제도 현황	개선 논의
중앙정부	건설기준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 선택적 적용	·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
	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하도록 개정 ·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관련 내용 구체화
	분쟁조정	환경조정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시 피해기준 강화
지자체	기술개발	-	· 자재 개발 등 기술적 지원(서울)
	예방·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주민차원		-	· 대책위원회 출범, 다양한 예방 활동

제도 현황

정책 동향

한계

향후 과제

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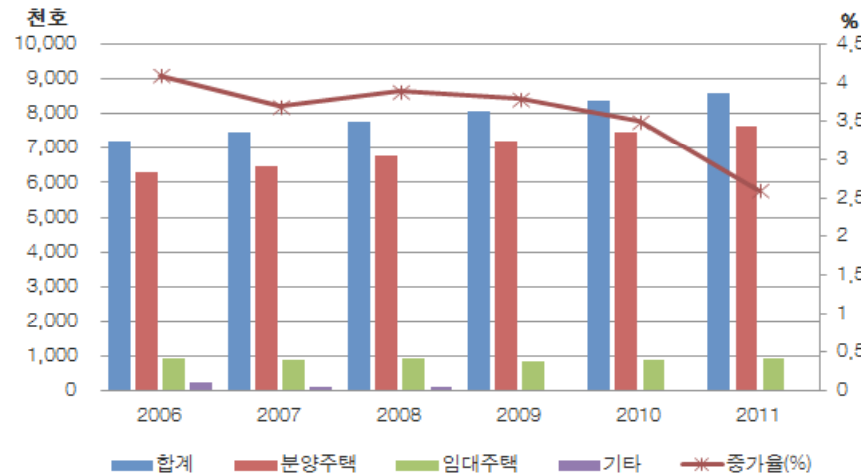
# 3 기존 정책 · 제도의 한계

( a u r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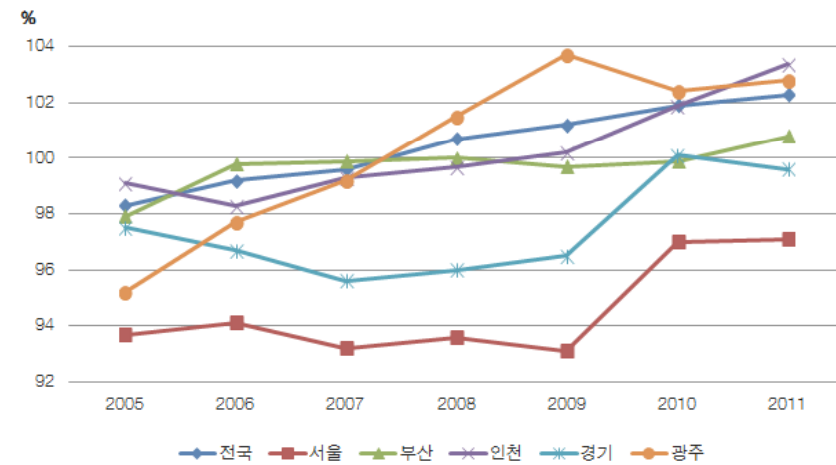
# 3 기존 정책 · 제도의 한계

## 신규 공동주택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강화 정책

- 표준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공사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여 최저등급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대응해 온 업계의 관행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의 실질적인 저감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 신규 주택에 대한 규제강화보다는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2002년에는 11.2%에 이르던 공동주택 증가율이 2011년에는 2.5%로 감소하는 등 주택 재고에서 신규 주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감소



공동주택 현황(2006-2011), e-나라지표



(신)주택보급률 변화 추이(2006-2011), e-나라지표

제도 현황

정책 방향

한계

향후 과제

제도화 방안

# 3 기존 정책 · 제도의 한계

##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미비

- 현재 층간소음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생활소음 관련 기준이 부재
  - 분쟁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지원 방안, 벌칙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 미흡
  - 관리규약이나 운영지침 등을 수립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규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나 벌칙 규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인식과의 격차

- 표준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효과에 대한 문제 제기
  -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끊임없이 층간소음 민원 제기
- 현행 소음기준은 실제 현장에서의 소음원을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
  -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환경소음지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 등을 규제하는 데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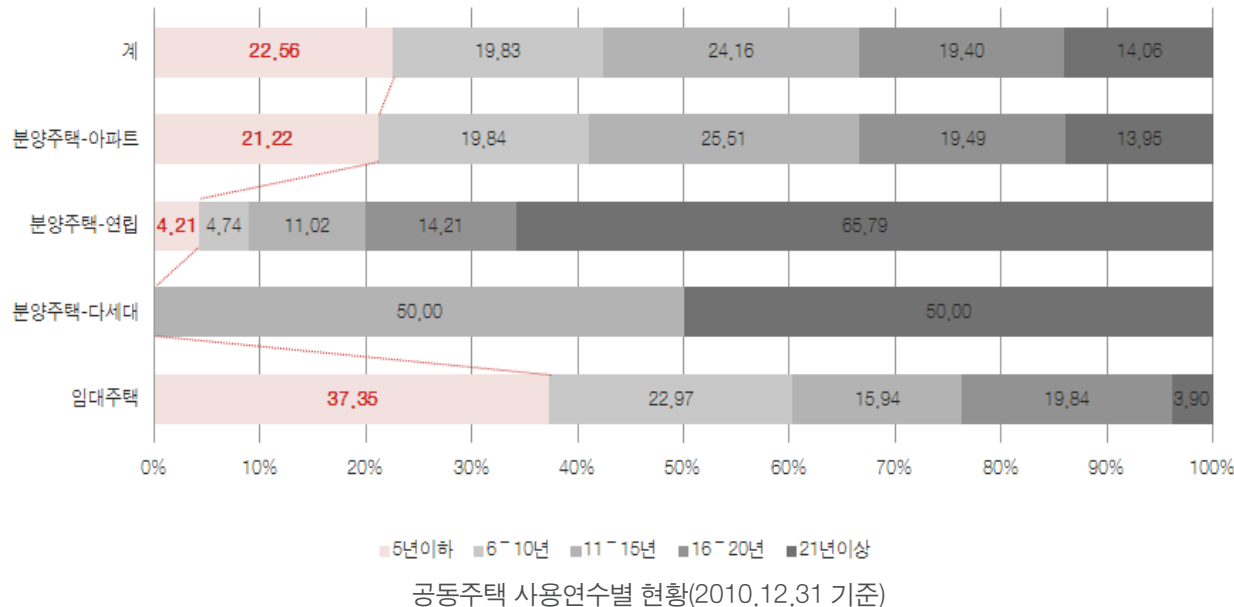
# 4 향후 정책 과제

( a u r i

# 4 향후 정책 과제

## 정책 방향

- 주택공급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면서 공동주택 내에서의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음
  - 상대적으로 공사원가가 적게 들고 층고를 낮출 수 있는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나 진동의 차단 성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공법으로 자리 잡음. 2009~2011년 대형건설사 7곳이 건설한 아파트의 85%가 벽식구조
-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77.44%, 승인이 아닌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층간소음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
  - 2010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이 도입된 2005년 이후에 건설된 비율은 전체의 22.56%에 그침



# 4

## 향후 정책 과제

### 정책 방향

-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단순한 규제 강화나 기준 설정보다는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 인식**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네 가지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 진단 및 정보 공개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형별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과 전달 경로, 갈등 양상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등급화하여 정보 공개

#### ■ 기존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홍보

- 기존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보완재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쓸 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층간소음 성능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지원책 강구

#### ■ 주민 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 유도

- 하향식의 ‘규제’ 나 ‘관리’ 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한 주민들 사이의 ‘약속’ 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정비

#### ■ 분쟁 조정 체제 정비

- 층간소음 현황 진단에 근거하여 체감지수를 고려한 생활소음 기준 설정.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지원기능 활성화



# 5

---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방안

## 5

##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방안

## 제도화 방안

제도현황

정책방향

한계

향후과제

제도화방안

**공동주택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생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성능 정보 공개, 층간소음 강화시 인센티브 부여, 체감형 소음기준 적용, 공동주택과 주민 차원의 자율적 문제해결 유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 부서별 업무 체계 확립**

-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주택건설공급과, 녹색건축과), 환경부(생활환경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
- 다양한 규모, 기존 및 신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 체계 재정비 필요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공동주택 유형별 층간소음 현황진단, 보완재를 활용한 소음 저감 방안, 관리규약 및 주민생활규약 지침, 분쟁 조정을 위한 소음기준 마련 및 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예산 지원**

-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완재, 소음 차단재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 외에도 리모델링시 층간소음 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 5 공동주택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제도화 방안

## 제도화 방안



제도현황

정책제언

한계

향후과제

제도화방안

# 6 EPILOGUE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 a u r i

# 6 EPILOGUE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잠재된 갈등의 분출

과밀의 소음 도가니 로서의 공동주택

“아파트는 온통 소음의 도가니였다. 남편은, 좀 시끄러우면 어때, 라고 말했다. 집 없는 것보다 낫지, 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말에 수긍하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아니었다.

견딜 수 없이 화가 끓어오르기도 했다. 내가 이런 ‘집구석’ 을 마련하려고 그 고생을 했던가, 싶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중략) 사람이 정말, 이런 데서 살아야 하다니, 누가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부부가 선택해서 들어온 아파트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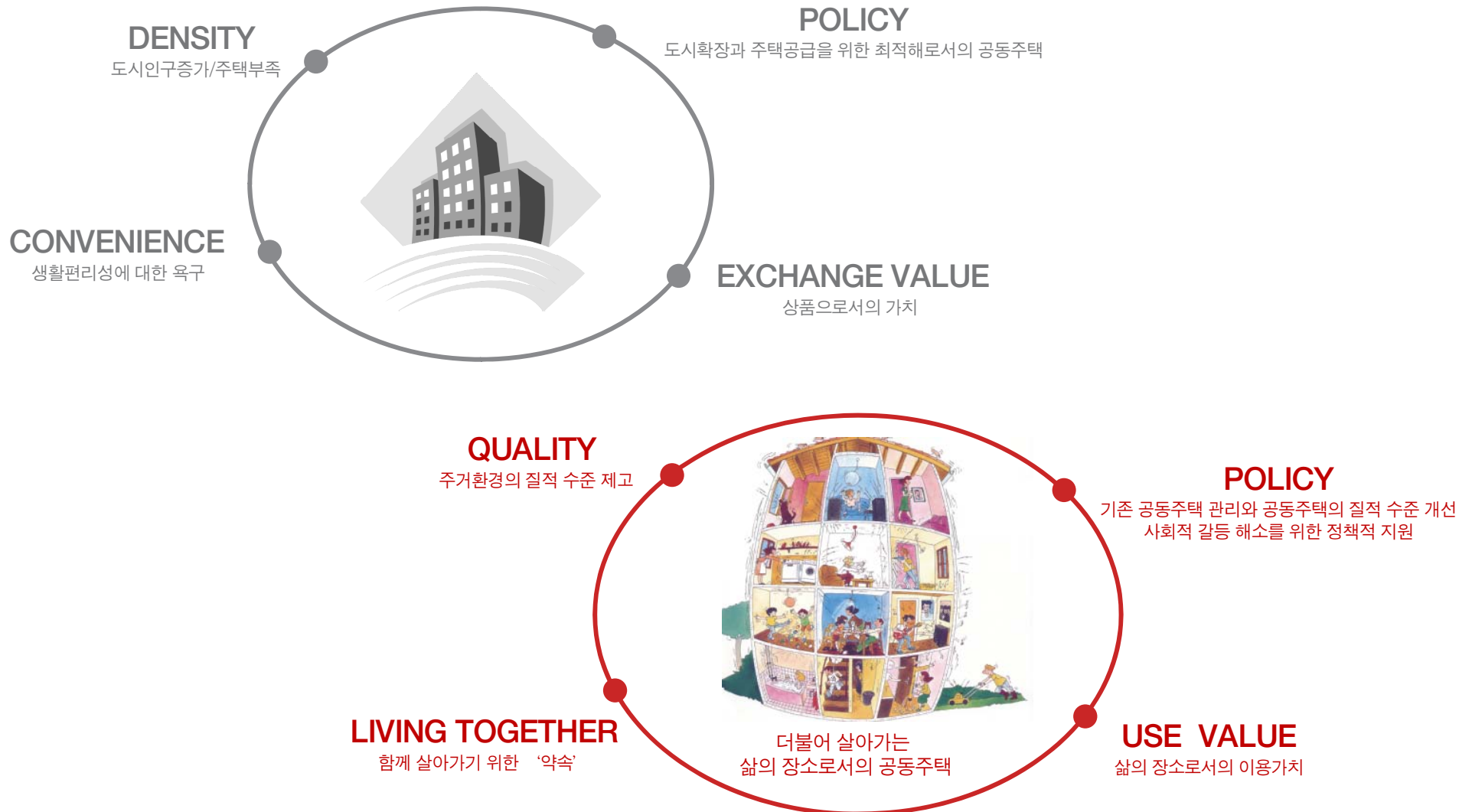
정희는 마치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려서 할 수없이 그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가’ 견딜 수 없이 야속스러웠다.”

- 공선옥(2002), 「한데서 울다」, 박철수(2006), 『아파트 문화사』 에서 재인용

# 6 EPILOGUE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패러다임의 변화



# 6 EPILOGUE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 프랑스 사례

**소음정보센터(CIDB : Centre d' 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sur le Bruit)**  
 1978년 환경부 발의로 신설된 기구로서 음환경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기관, 업체, 시민단체, 전문가협회, 연구단체·대학 등 다양한 주체 사이의 교차로로서 정보제공, 전화상담, 음향문제자문, 자료발간, 교육, 설문조사 등의 역할 수행







# 6 EPILOGUE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 고려

"On ne peut pas régler le problème du bruit (des bruits) en traitant seulement les aspects techniques, cela ne signifiant aucunement que ces aspects techniques doivent être purement et simplement ignorés. Mais les spécialistes de l'acoustique ne doivent pas avoir le monopole de la question du bruit. Les autres concepteurs et acteurs de la ville doivent s'en saisir à leur tour, les architectes, évidemment, mais aussi les industriels, les aménageurs ou encore ceux qui ont en charge l'organisation des circulations, etc. [...] Le bruit est partie intégrante de notre quotidien, le meilleur moyen d'en maîtriser les excès consiste certainement à la considérer sous tous ses aspects."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술적인 측면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가 음향 기술 전문가들만의 영역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즉 건축가, 관련 산업체, 도시개발자, 교통전문가 등  
도시의 여러 주체들이 모두 소음 문제 해결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소음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포괄적인 문제이므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Dominique Bidou, CIDB(Centre d' 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sur le bruit, 프랑스 소음정보센터) 센터장

감사합니다

( a u r i